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16나1219(본소) 운영계약 해지통보 무효 확인 등  
2016나1226(반소) 상표 등 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뉴시스대구경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뉴시스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532349(본소), 2015  
가합570273(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7. 7. 13.자 대구·경북 취재본부 운영계약에 기한 대구/경북 취재본부 운영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반소]

1. 원고는 별지1 목록 중,

가. 제1 내지 5항 표시 각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간판, 현수막, 명함, 공문, 거래서류 등에 표시, 전시, 배포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제1 내지 5항 표시 각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상품에 표시하거나,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제1 내지 5항 표시 각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별지2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라. 제6항 표시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간판, 현수막, 명함, 공문, 거래서류 등에 표시, 전시, 배포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 제6항 표시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상품에 표시하거나,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바. 제6항 표시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가. '주식회사 뉴시스대구경북'이라는 상호 또는 '뉴시스', 'NEWSIS'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뉴시스', 'NEWSIS', '뉴시스대구경북', 'NEWSIS대구경북', '뉴시스대구경북취재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취재활동, 기사작성활동, 기사출고활동, 행사개최활동 및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가.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3. 8.자로 마친 상호변경등기(등기번호 039189)의 상호 '주식회사 뉴시스대구경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주식회사 가비아에 2013. 12. 2. 등록한 도메인이름 'A'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2007. 7. 13.자 대구·경북 취재본부 운영계약에 기한 대구/경북 취재본부 운영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① 이 사건 등록표장에 대한 사용금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1항), ② 상호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 및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③ 원고 사용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2의 나항) 및 ④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3의 나항)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청구취지 제2의 나항 부분의 원고 사용 명칭과 '유사한 명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취지 제1항 부분 및 청구취지 제3의 가항 중 '주식회사 뉴시스대구경북'의 '주식회사', '대구경북'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위 각하,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각하,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용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2.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마. 피고 대표이사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내용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4행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51호증'을 추가하며, 7면 아래 각주 2)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운영계약을 피고의 동의 하에 승계한 자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

는 이 사건 운영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로 고쳐 쓰고, 7면 아래 각주 3) 부분,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 1심 판결 10면 아래에서 4행부터 11면 4행까지 부분, 제12면 아래에서 7행부터 10행까지 괄호 부분 및 13면 5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며,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 『마. 피고 대표이사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B<sup>1)</sup>, C에 대하여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B, C는 2017. 6. 5.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뉴시스 지역취재본부가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자체적으로 국내외의 정치 등에 관한 보도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한 사실도 없어 뉴시스 지역취재본부가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6형제1517호).』

### 3. 부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7. 13. 피고와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뉴스통신사업자로서 활동하였는데, 2009. 11.경부터 피고의 지역본부 운영방식이 뉴스통신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1. 1.경 '뉴시스전국본부장 협의회'는 피고에게 지역본부 합법화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1) B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2015. 12. 29. 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지역본부의 합법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원고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신세계뉴스통신 설립 행위는 이 사건 운영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운영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우선, 갑 제5, 12, 13, 4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9. 11.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의 지역본부 운영 방식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신세계뉴스통신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세계뉴스통신의 설립은 그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바는 있다.

① 피고의 지역본부 중 하나인 대전충남본부의 본부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피고의 지역본부 운영방식이 뉴스통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1. 10.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의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뉴스통신법 위반이고, 뉴스통신법 제34조 제1호에 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② 피고의 경쟁사인 연합뉴스는 2010. 11.경 내부회의를 통하여 피고의 지역본부 운영방식은 뉴스통신법 및 신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③ 이에 피고의 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구성된 '뉴시스전국본부장 협의회'는 2010. 12. 1. 지방본부의 뉴스통신법 위반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대책안은 "㉠ 뉴스 통신판매 계약은 피고 명의로 해야 한다. ㉡ 지방본부는 인터넷 신문이라도 등록한 후 기사를 채용하고 취재활동을 시켜야 한다. ㉢ 인터넷 신문은 자체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뉴시스전국본부장 협의회는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가 제시한 대책안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④ 뉴시스전국본부장 협의회는 2011. 1. 20. 피고에게 "지방본부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한 귀책사유는 모두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지방본부의 합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⑤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13.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법인사업자를 고집할 경우, 원고도 뉴스통신법상 뉴스통신사업자로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뉴스통신법에 위반될 수 있고, 그 결과 피고가 생산하는 뉴스 등 콘텐츠 판매 대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⑥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지사' 형태로 지역 본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⑦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고는 2014. 1.경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한 후, 2014. 7. 3. 신세계뉴스통신을 뉴스통신법상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4. 1. 13. 신세계뉴스통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그러나 갑 제2, 5, 6, 43호증, 을 제1, 2, 3, 4, 6, 39, 40, 43, 44, 47, 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세계뉴스통신 설립 행위가 위와 같이 그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기사 159건을 신세계뉴스통신에 제공하여 위 기사들이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최종 편집권 및 출고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운영계약 제13조가 규정한 피고의 통신사로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운영계약 위반 사실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13.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 피고가 2007. 7. 13.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상대방은 G 개인이었고, 이후 계약 상대방이 D, H, I로 순차 변경된 후 마지막으로 법인인 원고에게 대구/경북 취재본부 운영의 위탁이 이루어졌는데, ㉡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운영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운영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 원고에게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의 법적 형태와 관련하여, 원고가 법인일 경우 로이터, AP통신 등 해외통신사의 통신료 이중 부과 우려 및 뉴스통신법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구/경북 취재본부의 운영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고, 법인보다는 개인의 형태로



남아있을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할 뿐, 지역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별도의 뉴스통신사를 설립하라고 권유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갑 제5호증(이 사건 내용증명)

1. 본 문건은 당 법무법인이 주식회사 뉴시스(이하 '발신인'이라 합니다)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2. 발신인은 귀사와의 사이에서 귀사의 운영권에 관하여 2007. 7. 13.경 D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합니다), 2008. 12. 1.경 H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합니다), 2009. 12. 1. I에게 위탁하는 합의서(이하 '3차 합의서'라 합니다)를 G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뉴시스 대구/경북 취재본부는 2008. 7. 30.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로, 그 후로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법인 전환 후 작성된 2, 3차 합의서는 (주)뉴시스 대구/경북 취재본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G이 계약자로 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당사가 G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귀사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여지며, 당사는 대구/경북 지역 취재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귀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한편, 발신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로이터, AP 통신은 본부별로 통신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이 지역취재본부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을 경우 이는 발신인 소속으로 보고 따로 통신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 발신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파악하여 향후 별도의 통신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법인사업자를 고집할 경우, 귀사도 뉴스통신사업법상의 뉴스통신사업자로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뉴스통신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고, 그 결과 뉴시스가 생산하는 뉴스 등 콘텐츠 판매 대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② 피고가 2013. 12. 30. 대전/충남본부와 체결한 약정서 제25조에 "대전/충남본부의 사업자 등록은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뉴스통신법과 신문법 상 뉴스통신사업자로 등

특하지 않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대전/충남본부가 모두 책임을 지며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대전/충남본부는 법인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의 취지와 같이 개인이 아닌 법인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일뿐, 피고가 지역본부에게 별도의 뉴스통신사를 세워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위 약정서 제26조에 "대전/충남본부는 로이터, AP 통신사 등이 사진,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법인 단위로 계약 체결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취지와 같이 지역본부가 법인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해외통신사의 통신료 이중 부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원고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로서는 설립 전에 피고에게 신세계뉴스통신의 설립 구상 계획을 알리면서 피고와 향후 계획과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설립 이후에라도 피고에게 신세계뉴스통신의 설립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그러나 원고는 신세계뉴스통신의 설립 전에 피고와 위와 같은 협의를 한 바 없고, 설립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가 여러 경위로 신세계뉴스통신 설립 사실을 직접 인지한 후, 원고의 신세계뉴스통신의 뉴스통신사업자 등록일인 2014. 7.경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4. 11. 27.에서야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에게 신세계뉴스통신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였고, 원고는 위 공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신세계뉴스통신의 설립 사실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피고의 문의에 대하여 피

고에게 해명이 필요 없는 신세계뉴스통신사와 원고와의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대구/경북 취재본부 소속 배준수 차장의 신세계뉴스통신으로의 진출에 관한 피고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피고와 협의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 인사 등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원고는 피고의 지역본부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하였다면 더욱이 피고와 사전 또는 사후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대구에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한 후 2015. 2. 1. 충남 천안시에 '신세계뉴스통신 충청취재본부'를 신설하고 그 운영을 개인사업자인 J에게 위탁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지역에까지 지역본부를 신설하면서 지역적 범위를 확장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뉴스통신법상 6개월 동안 이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은 뉴스통신사는 그 등록이 취소되므로, 신세계뉴스통신이 활동 부진으로 제재를 받아 폐업 조치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충청취재본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뉴스통신법 제4조 제2항에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신세계뉴스통신 설립 이후인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들이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보도되었으므로 이미 신세계뉴스통신의 뉴스통신사업자로서의 활동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가 단지 활동 부진을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신세계뉴스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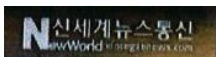
충청취재본부'를 신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피고의 지역본부 운영 방식에 대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운영상의 장점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뉴스통신법 위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연합뉴스와 같이 '지사' 형태로 지역 본부를 운영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지역본부 운영방식을 통하여 피고는 해당 지역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뉴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인건비, 사무실, 임대 유지 비용을 지역본부가 독립적으로 부담하므로 비용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 한편 원고는 지역 본부의 수입 중 90%를 모두 취하게 되어 수익 구조에 있어 유리하고, 원고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뉴스전재계약, 광고계약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원, 피고 쌍방은 위와 같은 각자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의 지역본부가 취재한 뉴스가 대외적으로 송출되는 과정은 ㉠ 피고의 지역본부가 관할 지역의 뉴스를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피고가 운용하고 있는 기사 입력 및 출고시스템인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에 올리는 단계, ㉡ 위 작성기사가 CMS의 '편집 대기 목록' 리스트에 올라가는 단계, ㉢ 피고의 부서 중 '전국부'가 각 지역본부가 올린 기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사를 직접 수정하거나 작성자에게 수정 지시를 하여 편집 작업을 거치는 단계, ㉣ '전국부'에서 최종적인 출고 결정을 거쳐 대외적으로 피고 명의로 기사 출고(송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제1조에서 '원고가 관할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미디어와 관공서 등에 뉴스통신을 공급하는 사업'을 '피고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본부가 취재 및 공급한 기사에 대한 최종 편집권 및 출고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직접 뉴스전재(공급)계약 및 광고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대구/경북 지역 내의 언론사 및 관공서 등으로부터 뉴스전재료 및 광고료를 수취하고, 이러한 뉴스전재료 및 광고료 중 10%를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이 사건 운영계약 제8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는 원고가 직접 취재한 뉴스를 지역 언론사 및 관공서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뉴스를 열람, 전재할 수 있는 '프라임 뉴스 IP<sup>2)</sup>'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의 프라임뉴스 IP 판매 권한은 지역 내의 언론사 및 관공서에 한정될 뿐 신세계뉴스통신과 같이 피고와 동종업종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신세계뉴스통신에 직접 기사를 공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⑦ 원고는 2014. 7.경 원고의 대표이사 D이 대표로 있는 신세계뉴스통신과 뉴스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가 취재·공급하고 피고가 최종 편집을 하여 대외적으로 피고 명의로 출고(송출)가 이루어진 기사와 그 내용이 같은 기사 159건을 신세계뉴스통신에 제공하였으며, 그 기사들은 신세계뉴스통신의 홈페이지(<http://xinsegaenews.com>)에 신세계뉴스통신의 명의로 게재되었다. 신세계뉴스통신은 위 기사 말미 부분에 '온라인뉴스팀 [enews@xinsegaenews.com](mailto:enews@xinsegaenews.com)'으로 기재하여 작성자가 신세계뉴스통신인 것처럼 게재하였고, 일부 기사 사진의 우측 하단에 '



과 같은 워터마크를 삽입하였다. 나아가 일부 기사의 서두 부분에는 [대구=신세계뉴스통신], [구미=신세계뉴스통신]으로 기재하여 신세계뉴스통신이 직접 취재

2) 이러한 프라임뉴스 IP를 통해 뉴시스 프라임뉴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피고의 기사 및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 통신사의 기사를 열람, 이용, 전재할 수 있게 된다. 원고가 지역 내의 언론사 및 관공서와 뉴스 전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언론사 및 관공서에 대한 '프라임뉴스 IP' 부여를 신청하면, 피고가 '프라임뉴스 IP'를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그 언론사 및 관공서는 피고의 뉴스를 열람, 이용, 전재할 수 있게 된다.

및 기사 작성을 한 것처럼 게재하였다. 한편 신세계뉴스통신이 피고의 기사 내용을 일부 전제한 경우도 약 170여 건에 이른다.

⑧ 원고가 위와 같이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교류협약을 근거로 기사를 제공하고 위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여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이하 '이 사건 기사 제공 및 전재 행위'라 한다)은 피고의 최종 편집권 및 출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신세계뉴스통신과 기사교류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에게 신세계뉴스통신에 대한 '프라임뉴스 IP' 부여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세계뉴스통신은 피고와 동종업종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기사를 이용 및 전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한 행위를 지적하자, 원고는 그 때 비로소 피고에게 신세계뉴스통신에 대한 '프라임뉴스 IP' 부여를 신청하였고, 2015. 1. 12. 피고에게 "(주)신세계뉴스와 기사교류협약에 따른 시험 게재 부분은 업무 착오로 빚어졌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어 원고도 피고의 동의 없이 다른 뉴스통신사에 기사를 제공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나아가 이 사건 기사 제공 및 전재 행위는 피고의 뉴스통신사로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sup>3)</sup> 제8조는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 제2항에는 "언론사와 기자는 타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3)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들 강령은 언론사들과 기자들에게 주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제공 및 전재 행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표절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역시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 또는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통신기사 등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 또는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제공 및 전재 행위는 신세계뉴스통신이 피고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세계뉴스통신이 직접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한 것처럼 출처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뉴스통신사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뉴스의 본질적 가치인 신속성과 독점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⑩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세계뉴스통신에 대한 기사 제공이 기사교류협약에 따른 시험운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신세계뉴스통신에 제공한 기사들의 대부분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어서 창작성이 떨어지는 점, 신세계뉴스통신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뉴스통신사로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세계뉴스통신이 기사교류협약에 따른 시험운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기사에 "뉴시스 제공" 또는 "본 기사는 기사교류협약에 따라 뉴시스로부터 제공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그 출처를 밝혔어야 하는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세계뉴스통신이 직접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한 것처럼 출처 표시를 하였다. 또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도 기자의 보도자료 요약, 축약, 강조, 편집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같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하

더라도 언론사마다 뉴스의 결과물이 다르다는 점에서 뉴스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 제공 및 전재 행위는 수익의 발생 여부, 신세계뉴스통신의 인지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운영계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다가 기사 제공 기간이 짧지 않고 제공된 기사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판사            권동주

                  판사            김동규



별지 1

목 록

1.

뉴스통신사 뉴시스  
NEWS AGENCY NEWSIS

2.

뉴스 헬스  
 NEWSIS Health

3.

뉴스통신사  
NEWSIS NEWS AGENCY

4.

더 뉴시스  
THE NEWSIS

5.

한국뉴스통신사 뉴시스  
KOREA NEWS AGENCY NEWSIS

6.

공감연결  NEWSis.( )

## 별지 2

### 목 록

1. 제16류: 신문, 잡지, 연감,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서적, 소책자
2. 제38류: 무선통신업, 밴(VAN)통신업, 인공위성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통신사업, 텔레비전방송업,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교육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유선텔레비전 방송업
3. 제40류: 인쇄업
4. 제41류: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영상편집업, 신문편집업, 잡지편집업, 정기간행물편집업, 서적편집업

### 별지 3

## 목 록

#### 1. 제9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 2.

- 제35류: 간행물배포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작성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자료대여업, 신문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옥외광고업, 우편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 제38류: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뉴스전송업, 무선통신업, 밴(VAN) 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인공위성통신업, 통신망을 이용한 주식시장정보 송신업, 통신사업, 교육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 제40류: 인쇄업, 제본업
- 제41류: 영상편집업, 서적출판업, 신문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잡지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전용},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읽기전용}, 저널출판업, 서적편집업, 신문편집업, 정기간행물편집업, 잡지편집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편집업{읽기전용}, 저널편집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보도업, 사진보도업, 파티계획업, 파티용역업, 행사개최대행업. 끝.